IMO 제13차 산적액체 및 가스전문원회(BLG 13) 참석결과 보고

I. 일반사항

○ 회 의 명: IMO 제13차 산적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(13th Session of Subcommittee on Bulk Liquids and Gases)

○ 기간/장소: '09. 3. 2~6 (5일간)

IMO Headquarters, 영국 런던

○ 참 석 자 : 안전기획팀 이경열 검사원

Ⅱ. 의제 목차

- 1. 의제 목록 및 채택
- 2. 다른 IMO 회의의 결정사항
- 3. 케미컬의 오염 위해성·안전성 평가 및 개정 준비사항
- 4. 바이오 연료 및 혼합유 운송관련 규정 검토
- 5. 2004 BWM협약 통일적 시행 관련 지침서 및 기타 개발
- 6.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관련 규정 개발
- 7. 사고 분석(Casualty analysis)
- 8. IACS의 통일 해석에 관한 심의
- 9. 선저 생물부착(bio-fouling)에 의한 침해성 수중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해결방안 개발
- 10. 선박용 연료 및 MARPOL Annex I 화물(원유)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권고안 검토
- 11. IGC Code 개정
- 12. NGHP 운반선 안전 규정

- 13. MARPOL Annex VI 및 NOx Technical Code 개정관련
- 14. 남극해역에 있어서 선박 중질유의 운송 및 사용

 관련 MARPOL Annex I 개정
- 15. 작업계획 및 제14차 BLG 의제
- 16. 10년 의장 및 부의장 선출
- 17. 기타사항
- 18. 해양환경보호위원회(MEPC) 보고서 문안 정리

Ⅲ. 주요 결정사항

- MARPOL Annex VI 및 NOx Technical Code 개정 관련
 - NOx Technical Code(NTC 1997 or NTC 2008)의 적용 시점 명확화
 - Tier Ⅲ 적용 기술(SCR) 지침서 개발에 필요한 초안 논의 및 BLG 14 위임 사항 결정
- 케미컬의 오염 위해성 · 안전성 평가
 - 아국에서 제출한 4종의 탱크 세척제에 대해 사용승인 획득
- 바이오 연료 및 혼합유 운송관련 규정
 - 항해 중 바이오 연료와 석유의 선상혼합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금지하기로 동의하였고 부두에서 혼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지침은 ESPH 15(09.10 예정) 작업반에 검토 요청
- 선박평형수 협약 및 선체생물오손 관련
 - 「선박평형수 처리 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조제물의 안전 취급과 보관에 관한 지침서

및 처리 과정에서 선박과 선원의 위해 요소에 대한 선원의 안전 절차,를 완성

- ⇒ MEPC 59차 회의에서 기술회람 문서로 채택함 것을 요청
- -「동일 활성물질에 있어서 어떤 신청자에게 기본승인 후 이를 다른 신청자에게 재차 승인시의 기준」은 기준안 자체에 대한 반대가 많아 추후 통신작업반의 작업을 거쳐서. BLG 14차 회의에서 계속 논의
- 차기 BLG 14차 회의에서는 선박평형수(의제 5)와 선체생물오손(의제9)을 함께 다루는 작업반 회의를 개설할 것을 요청
- O IGC Code 개정
 - 가스운반선 화물압축기실의 누출가스탐지 방법에 대한 아국 의제를 IGC Code 개정을 주관하는 SIGTTO¹¹에서 동의하였으며, 작업반에 아국 제출 의제를 회람하여 2010년 최종 개정안에 반영 예정

Ⅳ. 의제별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

의제 3 케미칼의 오염 위해성·안전성 평가 및 개정 준비사항

- 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 - ESPH 14차 작업반 회의('08.10.27~31)결과 및 이와 관련된 안건들이 논의
- 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 - 신규화학 제품에 대한 선박운송요건 결정
 - ESPH 14 작업반 회의에서 평가한 총 7종의 신규 화학제품에 대한 최소운송요건에 동의

- 하였으며, 차기 IBC Code 개정 시 동 제품들을 추가하기로 결정
- 회기 중에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신규 화학 제품은 없었음
- 최소운송요건 결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출할 경우, 향후 "High level Action Plan and the Planned outputs""(결의안 A,990(25); '09. 11. 29채택)의거하여 정보를 제출하자는 ESPH 작업반 보고서에 동의
- 탱크 세척제 사용승인
 - 총 48종의 탱크 세척제가 제출됨
 - 제출된 탱크 세척제의 평가는 제품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평가를 의뢰한 국가 간에 비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 으며, 대한민국, 벨기에, 네덜란드, 노르웨이 및 미국이 참여한 평가 작업반이 구성 되었음
 - 아국이 제출한 4종의 세척제는 모두 승인을 받았으며, 총 29종이 승인되고 19종은 거절 되었음
 - 전문위원회는 탱크 세척제 정보는 비밀사항으로 IMO에 별도로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국가에서 동 자료를 잘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함
 - 승인된 세척제는 MEPC.2/Circ.15(잠정평 가물질 목록) Annex 10에 등록되어 '09. 12. 17일 회람될 예정임
 - 구 탱크세척제 평가 기준(MEPC.1/Circ. 363)에 따라 승인된 세척제는 2010. 7. 31 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, 개정된 기준(MEPC.1/Circ.590)에 따라 유효기간 이전에 재평가를 받도록 당부함

¹⁾ SIGTTO: 국제LNG탱커선 및 터미널운영자연합회

^{2) 2008~2009}년 동안 IMO의 추구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처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공

- O GESAMP/EHS³ 물질평가 비용 공지
 - GESAMP/EHS에 화학물질 평가비용으로 1건당 6,500US\$ 책정되었으며, 2009년 제46차⁴⁾ 회의부터 동 제도가 시행되며, 비용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의뢰자(제조 자)가 지불하여야 한다고 공지함
 - ※ 물질평가 시 소요비용 및 절차 안내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는 BLG.1/Circ.28 (GBSAMP /EHS 물질평가 비용안내)을 '08. 8. 18일 회람함
 - IMO 내에 공식적인 GESAMP 사무실이 개설 되어, GESAMP 활동 지원 및 내·외적인 연락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공지함
- 바이오 연료유 및 그 혼합물의 운송요건 검토
 - 이번 회기에서 전문위원회는 BLG 10(06. 4)에서 결정한 바이오 연료와 석유의 혼합유에 대한 아래의 임시 운송지침을 2010. 12. 31 (18개월)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
 - ① 바이오디젤, 메틸에스테르지방산(FAME), 에탄올을 운송할 경우 MARPOL 부속서 II 및 IBC Code에 따름
 - ② 바이오 연료와 석유류의 혼합이 다음의 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MARPOL 부속서 I에 따름
 - 최대 15%의 바이오디젤과 85%의 일반 디젤의 혼합유. B15 또는
 - 최대 15%의 바이오에탄올과 85%의 일 반휘발유의 혼합유, E15 또는
 - 최대 15%의 알코올과 85%의 일반휘발 유/석유의 혼합유, E15
 - ③ 이들 제품을 MARPOL Annex I 또는 II에

- 따라 운송할 경우, 화주가 격리구분 (혼적)에 관한 정보를 선사에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, 이들 제품은 선박의 모든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함
- ④ 상기 2항의 규정을 초과하는 바이오 연료 유가 혼합된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화주가 정부와 연락 하여야 함
- 바이오 연료를 MARPOL Annex I 화물로 운송할 경우에는 하역 후 잔유를 육상으로 전량 이송처리 하거나 ODME®(유 배출 감시 장치)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입증 하에만 임시 운송지침에 따라 운송하도록 결정함
- ESPH 15('09, 10 예정)에서 다음과 같이 향후 운송요건을 추가로 검토하여 현재의 임시운송지침을 대체하기로 결정함
 - ① Band 1: 석유류가 85%이상 함유 MARPOL Annex I 화물로 취급 ODME 가 혼합유에 대해 정상 작동한다는 승인 또는 증서를 보유, 또는 잔유 및 세척물을 육상으로 이송처리
 - ② Band 2: 석유류가 1%를 초과하고 85% 미만 함유-MARPOL Annex II 화물로 취급하여 MEPC.1/Circ.512(산적액체물질 운송을 위한 잠정평가 지침서)에 따라 잠정평가를 한 후 제3자 합의에 따라 운송 단, 선형은 혼합유의 어느 구성성분보다 낮아서는 안 됨, 또는 오염분류 X, 선형 2로 하여 관련 제품 중 가장 엄격한 최소운송요건을 적용
 - ③ Band 3 : 석유류가 1%이하 함유된 바이오 연료유-MARPOL Annex II 화물로 취급

³⁾ GESAMP Working Group on the Evaluation of Hazards of Harmful Substances Carried by Ships(GESAMP 하부의 유해액체물질의 유해성평가 작업반으로 최대 9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)

^{4) 2009. 4, 20~24}일 개최 예정으로, 평가서류제출은 3월 13일까지이며, 비용지불은 4월 20일 이전임

⁵⁾ Oil Discharge Monitoring Equipment

O IBC Code 제19장 검토

- BLG 11('07. 4)차 회기중 ESPH 작업반은 IBC Code 제19장에 수록되어 있는 화학물질 이명(동의어) 및 용어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
- BLG 12('08, 2)차 회기 중 ESPH 작업반은 동 사항 검토를 위해 화학물질 전문가가 요구된다며 IMO 회원국에 전문가 지원을 요청
- 네덜란드는 BLG 13에 검토초안을 제출 하였으며, ESPH 15('09, 10예정)에서 동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여 BLG 14에 보고하기로 결정

의제 4

바이오 연료 및 혼합유 운송관련 규정검토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○ BLG 12('08. 2) 회기 중 ESPH 작업반은 바이오 연료가 항해 중 선상에서 실제로 혼합되는 경우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동 사항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MEPC 58('08. 10)에 보고함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○ 이번 회기에 네덜란드 및 영국은 항해 중 선상 혼합에 대한 어떠한 IMO 규정도 없어 이러한 상황은 안전 및 해양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, 동 사항을 BLG 의제범위에 포함시켜 긴급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(BLG 13/4)하고 검토방향 설정을 위해 아래의 2가지 방안을 제시함

- 〈제1안〉항해 중 바이오 연료유 혼합을 허가 하는 방안
 - 혼합이 허가되는 선형, 제품
 - 안전, 오염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혼합 절차
 - 증서 및 교부, 운송서류, P&A 매뉴얼⁶⁾ 및 화물기록부 등의 검토 필요
- 〈제2안〉항해 중 바이오 연료유 혼합을 금지하는 방안
 - 금지조항 개발이 필요함
- IPTA[®]는 안전 및 해양오염 위험성 등의 사유로 항해 중 선상혼합에 대한 반대 문서를 제출 함(BLG 13/4/1)
- INTERTANKO[®]는 동 작업과 관련된 화물운 용지침을 IMO에서 가능한 빨리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며, 다음의 2단계 개발절차를 권고함(BLG 13/4/2)
 - 〈1 단계〉 부두에서 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임시 지침 개발
 - 〈2 단계〉 항해 중 선상에서 혼합 지침 개발
- 이에 대해 전문위원회는 선상 혼합 시 해양오 염, 모니터링 및 안전상의 문제 등 추가적인 정보가 많이 필요함으로 현 시점에서는 항해 중 선상혼합은 금지하기로 동의하고, 선박이 부두에 있을 경우에 한해서 동 작업관련지침 을 검토해 줄 것을 ESPH 작업반에 요청함

⁶⁾ Procedure and Arrangements Manual, MARPOL Annex Ⅱ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유해액체운반선에 비치하여야 하는 매뉴얼

⁷⁾ IPTA(International Parcel Tankers Association, 국제개품탱커협회) 케미컬 제품 운송 유조선 선주들이 모여 결성한 연합체로영국 소재 비정부간 기구이며, 액화 화물 운송 산업의 영향력 증대, 관계 증진 및 회원사 이익 도모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음

⁸⁾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, 국제독립탱커선주협회로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으며 탱커 선주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연합체

- 회기 중에 개설된 ESPH(WG1) 작업반은 아 래 항목에 대하여 ESPH 15(09, 10예정)에서 추가 검토 하겠다고 전문위원회에 보고함
 - 증서 및 교부, 운송서류, P&A 매뉴얼 및 화물기록부 등의 검토 필요
 - 최종 제품명, 분류(오염분류, 선형, 최소 운송요건)
 - 하역 후 세척기준 및 배출요건(MARPOL Annex I 화물로 운송시)

의제 5

2004 BWM협약 통일적 시행 관련 지침서 및 기타 개발

- □ BLG 13/5 : 동일 활성물질에 있어서 어떤 신 청자에게 기본승인 후 이를 다른 신청자에게 재차 승인시의 기준안 마련(사무국)
- 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 - 선박평형수 활성물질 승인 지침서(G9)에 의하면, 활성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는 기본승인을 받아야 하나, 이를 다른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 적용 시 기본승인은 생략 가능
 - MEPC 57 회의에서 선박평형수 작업반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의 초안을 작성하였고, 이를 BLG 13 회의에 제출한 것임
- 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 - 아국을 비롯한 스웨덴, ICS[®] 등에서 당초 기 본승인을 받은 업체의 기밀사항과 형평성 등 에 대한 우려를 표명
 -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, 작업반

- 회의 시 본 기준안 자체에 대한 반대가 많았으므로 완성하지 못하고, 통신작업반의 작업을 거쳐, 차기 BLG 14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
- 훈령안대로, 본 기준안의 작성이 지연 되었고, 통신작업반 및 차기 BLG 14 회의 시 아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
- □ BLG 13/5/1 : 협약 규칙 B-3.1과 B-3.2의 적용에 관한 해석 (IACS⁽⁰⁾)
- 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 - MEPC 56 회의에서 아국은 선박평형수관리 협약의 적용일자의 불명확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
 - 협약서에서는 적용일자를 적용년도(규칙 B-3.1)와 적용방법(B-3.2)으로 나누어 기술 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본 의제문서는 이를 정확하게 해석한 것임
- 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 - 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 본 문서의 해석에 동의
 - 본회의장에서 논의를 거쳐, 본 문서의 해석이 적절하다고 결정
 - 본 문서를 통해 해석된 적용 년도와 방법은 다음과 같음
 - 1500ton~5000ton의 선박평형수 탱크를
 가지는 선박은 규칙 B-3.1.1에 따른 2014
 년의 인도일 후 첫 번째 중간검사 또는 정기
 검사 중 빠른 날짜 이전에 D-2 기준을 만족

⁹⁾ ICS: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(국제선주협회)

¹⁰⁾ IACS: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(국제선급연합회)

해야 한다.

- 1500ton 미만, 5000ton 이상(보다 큰) 선박 평형수 탱크를 가지는 선박은 규칙 B-3.1.2 에 따른 2016년의 인도일 후 첫 번째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중 빠른 날짜 이전에 D-2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.
- 훈령안대로. 본 의제 내용이 채택되었음
- □ BLG 13/5/2 : FlowCAM 평형수 분석기를 활용한 항만 검사 시 D-2 선박 평형수 기준 확인 절차서 초안 (FOEI[™]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○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의 D-2 성능기준 만족 여부를 항만 검사 시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, 특정 제품인 FlowCAM을 활용하는 절차서 초안을 제시한 것임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바하마, ICS, 영국,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의견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특정 1개 제품을 토대로 한 지침서는 부적절하다고 함
- 본회의장에서 논의를 거쳐, 본 문서는 부적절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
- 훈령안의 아국 의견대로, 부적절한 것으로 결정

의제 6 가스연료(Gas-Fuelled)를 사용하는 선박 관련 규정 개발

□ "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" 관련 규정 개발(BLG 13/6-사무국, 13/6/1-노르웨이, 13/6/2-독일, 13/6/3-독일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MSC 78('04. 5)에서 노르웨이의 제출문서 (MSC /24/8)('04)에 따라 BLG, DE 및 FP에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이 설치된 선박에 대한 국제기준을 개발할 것을 지시함
 - BLG 11('07.4)의 결과로 나온 잠정지침서 초안을 다른 IMO 기구(DE, FP 및 STW 전문 위원회)에서 검토하였고, 그 결과를 BLG 12 ('08. 2)에서 설립된 통신작업반에서 반영 하도록 함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각국은 연료탱크의 별도의 비상배출시스템 설치에 대한 기본 안은 동의 하지만 Tank Type에 따른 설치비용 및 운용 문제가 대두 되어 비상배출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함
- O 노르웨이는 Gas-Fuelled Ship은 IMO Type C만 승인하는 방안도 제안하였으나, 추후 검토가 필요함
- "가스연료 선박의 안전에 대한 초안 잠정 지침서"를 완성하고 MSC Resolution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MSC 86 ('09.06 예정)에 제출함
- "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"이 허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SOLAS II-1장 26규칙(기관장치)에 삽입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석 문구 초안을 마련함
 - "Refer to the Interim Guidelines on safety for natural gas-fuelled engine installation in ships(resolution MSC...(86)"
- IGF 코드화를 위한 통신작업반을 구성에

¹¹⁾ FOEI: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(지구의 벗)이라고 하는 민간환경단체

동의하고, IGF 코드 초안을 BLG 14에 제출 하도록 함

○ 관련 의제의 완료일(Target completion)을 2012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MSC에 요청 하기로 함

■ 초안 작업반 회의결과

- 가. 초안 작업반 결성
 - 회의 2일째(3월 3일)에 다음과 같이 초안 작업반(DG 1)을 결성
 - 의장 : Ms. T. Stemre (Norway)
 - 간사: Mr. M. Ahmed (IMO)

나. 논의결과

- 아국을 포함한 11개국의 대표들이 초안 작업반(DG 1)에 참여함
- FP 53에서 도출된 결과를 잠정지침서 초안의 2.10(통풍장치) 및 3장(화재안전)에 포함함
- 가스연료 탱크를 비우기 위한 수단과 관련 하여 2.8.1.7항의 문구를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
- 선원의 교육 요건은 향후 IGF 코드의 개발 시에 STCW 협약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 므로 잠정지침서에 남겨두기로 결정함
- 통신작업반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기초로 상기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"가스연료 선박의 안전에 대한 잠정지침서"의 초안을 완성함(BLG 13/WP.6 Annex 1 참조)
-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허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SOLAS II-1장 26규칙(기관장치)에 주석(Footnote)을 삽입하기로 하고 문구 초안을 작성함
- IGF 코드화를 위한 작업계획 초안을 마련함
- IGF 코드의 개발을 위해 통신작업반을 계속 운영하기로 함
- 현재 진행되고 있는 IGC 코드의 개정 결과를

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IGF 코드의 개발 시 반영하기로 함

의제 9

선저 생물부착(bio-fouling)에 의한 침해성 수중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해결방안 개발

□ BLG 13/9 : 선체 생물오손에 의한 외래 수중 생물의 이동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 지침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보고서(뉴질랜드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이 문서는 뉴질랜드가 제출한 것으로, 선체 생물오손에 의한 외래 수중생물의 이동 최소 화를 위한 국제적 지침 개발을 위한 통신작 업반의 의장국 입장에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임
- 통신작업반에게 주어진 임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
 - 선체 생물오손에 의한 위해도 평가 연구 동향 조사
 - 선체 생물오손 방지 및 제거 기술 현황 조사
 - 국제적 지침 제정 방안 제시
 - 선체 생물오손 저감 잠정 지침서 초안 작성
 - 국제협약 제정 세부 계획 수립
- 다음과 같이 국제적 지침 제정 방안 검토

Option 1 : 지침서를 만들어 MEPC나 총회 결의서로 채택

Option 2: 방오시스템 협약에 연계

Option 3: 선박평형수 협약에 연계

Option 4: 새로운 국제협약 제정

Option 5 : MARPOL 부속서로 추가

 통신작업반 보고서에서는 일단 선체 생물오손 저감 잠정 지침서를 MEPC에서 결의서로 채택 하고(Option 1), 추후 별도의 국제협약을 제정 하는(Option 4) 순차적인 방안을 제시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유용한 통신작업반 보고서라고 판단하고 그대로 채택
- 뉴질랜드를 의장(Dr. Naomi Parker)으로 하는 통신작업반을 결성하여, 다음과 같은 임부를 부여하고 차기 BLG 14차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함
 - 해양환경, 인체 건강 및 자원에 대한 선체 생물오손에 따른 위해요소 저감방법
 - 선체 생물오손 및 법제화에 따른 잠재적 효과
 - 선체 생물오손 관리 지침서 개발 및 이에 대한 결의서 채택 방안
- 향후 BLG 14차 회의부터는 선체 생물오손에 대한 작업반을 결성하여 협약 준비를 시작하기로 함

의제 10

선박용 연료 및 MARPOL Annex I 화물(원유)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(Material Safety Data Sheets) 권고안 검토

■ MSDS 권고안에 대한 통신작업반 보고서 (BLG 13/10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○ 통신작업반은 MSC/Res. 150(77)('08. 10. 10 채택) 부속서 2의 Para.1(적용하는 유류범주)와 Para.2(유류성상에 대한 내용)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함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MSC/Res. 150(77)(08. 10. 10 채택)의 부속서 2의 Para.1(적용하는 유류범주)에 언급된 9개의 카테고리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
- MSC/Res. 150(77)('08, 10, 10 채택)의 부속서
 2의 Para, 2(유류성상에 대한 내용)는 통신
 작업반의 개정안을 수정하여 승인함(상세 수정사항은 작업반 보고서 참조)
- MSC 86('09. 6 개최예정)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할 예정임
- 정보공유가 필요한 관련단체 : 선박연료유 공급업체 및 해우회사

■ 작업반 회의결과

가 작업반 결성

- 회의 2일째 (3월 3일) 다음과 같이 작업반 (DG 2) 결성
 - 의장: Mr. M. Roldan (United States)
 - 간사: Mrs. S. Allnutt (IMO)

나, 논의결과

- 통신작업반에서 작성한 MSC/Res. 150 (77)('08. 10. 10 채택)의 부속서 2의 개정 안을 검토
- 부속서 2의 Para.1(적용하는 유류범주)에 언급된 9개의 카테고리는 사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
- 부속서 2의 Para, 2(유류성상에 대한 내용)는 통신작업반의 개정안(GHS¹²⁾에 따른 유류성 상기재)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유류성 상기재항목으로 사용하기로 함
 - 외양 (Appearance)
 - 냄새 (Odour)
 - 유동점 (Pour Point)

¹²⁾ GHS (United Nations Globally Harmonized System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) : 화학물질 부류·표지 세계조화 시스템

- 비등범위 (Boiling Range)
- 인화점 (Flash Point)
- 폭발상한/하한 (Upper/Lower Explosive Limit)
- 증기압 (Vapour Pressure)
- 증기밀도 (Vapour Density)
- 농도 (Density)
- 자동발화온도 (Auto-Ignition Temperature)
- 동점도 (Kinematic Viscosity)

의제 13 MARPOL Annex VI 및 NOx Technical Code 개정 관련

□ MEPC 58(08, 10, 6~10, 10) 보고서 (BLG 13/13 - 사무국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○ MEPC 58(08, 10, 6~10, 10)에서 BLG 13에 아래의 문서(나.항 참조) 개정을 위하여 위임 사항(Terms of Reference)으로 개정 및 지 침서 초안 개발을 지시함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MEPC 58(08, 10, 6~10, 10) 위임사항에 따라 아래의 문서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함
- "검사와 증서발급 조화 제도하의 개정된 검사 지침서"의 개정안을 마련함(Res.MEPC. 128(53))(05, 7, 22.채택)
 - 주요사항: 개정된 MARPOL Annex VI 및
 NTC⁽³⁾ 2008 맞추어 검사지침서를 개정함

- MEPC 59('09. 7 개최예정) 승인을 위하여 FSI 17차 위원회¹⁴('09. 4 개최예정)에 검토 요청 예정
- "MARPOL 부속서 6에 따른 PSC¹⁵를 위한 지침서"의 개정안 마련(Res.MEPC. 129(53))
 (05. 7. 22.채택)
 - 주요사항
 - (1) 개정된 MARPOL Annex VI 및 NTC 2008 따라 지침서 개정함
 - (2) 오존파괴 물질 배출장치에 대한 검사사항을 포함시킴
 - (3) VOC16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킴
 - MEPC 59(09, 7 개최예정) 승인을 위하여 FSI 17차 위원회(09, 4 개최예정)에 검토요청 예정
- "선박에 공급된 잔류유의 황함유량 모니터링을 위한 지침서"의 개정안을 마련(Res. MEPC. 82(43))(99, 7, 1 채택)
 - 주요사항: 연료유 황 함유량에 따른 시간당SOx 배출 한도치를 정하고 이를 지침서에 포함시킴
 - MEPC 59('09. 7 개최예정)에 통보하여 검토 요청 예정
- 개정된 MARPOL 부속서 6에 따른 "기름 샘플 링에 대한 지침서"의 개정안을 마련(Res.MEPC. 96(47))(02, 3, 8 채택)
 - 주요사항 : 개정된 MARPOL Annex VI에 맞추어 지침서를 개정
 - MEPC 59('09, 7 개최예정)에 제출예정
- MEPC 58('08, 10, 6~10, 10)에서 BLG 13에 지침서 초안을 개발하도록 지시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지침서 초안을 작성함

¹³⁾ NTC 2008: NOx Technical Code 2008

¹⁴⁾ FSI (Flage State Implementation) Committee : 항만국통제위원회

¹⁵⁾ PSC (Port State Control) : 항만국 통제

¹⁶⁾ VOC (Volatile Organic Compounds) : 휘발성 유기화합물

- 개정된 MARPOL 부속서 6 규칙 15.6(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)에 의해 요구되는 "VOC 관리 계획서 개발을 위한 지침서"를 수정함(BLG 13/13/2, BLG 13/13/3 관련)
 - 수정사항 : BLG13/13/2 참조
 - MEPC 59('09, 7 개최예정)에 MEPC Circular로 제출예정
- "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위한 지침서"의 개정안을 마련함(Res,MEPC,170(57)) (08, 4, 4 채택)
 - 개정된 MARPOL Annex VI에 맞추어 지침 서를 개정함
 - MEPC 59('09. 7 개최예정)에 검토요청 예정
- □ VOC 관리계획 개발에 관한 지침서 관련 (BLG 13/13/2-INTERTANKO¹⁷⁾. OCIMF¹⁸⁾
- 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 - INTERTANKO¹⁹와 OCIMF가 BLG 13/ 13/2 문서로 VOC 관리계획 지침서 초안 중 3가지의 사항(아래 2.항 참조)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
- 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 - 아래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여 "VOC 관리계획서 개발을 위한 지침서" 초안을 작성함
 - 화물 양하시 VOC 배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원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의 관련성 문구 삭제 (지침서 Para,1,3 과 2,2)

- 화물탱크 적 · 양하 순서, 속도의 개정, 변경
 무구삭제 (지침서 Para 1.4)
- 화물탱크의 부분 적재(Partial Filling)는 운송 중 VOC 배출과 관련이 없으므로 관련 문구를 삭제 (지침서 Para.1.4)
- 회의결과를 MEPC 59('09, 7 개최예정)에 MEPC Circular로 제출예정
- □ 원유선 VOC 관리계획서에 대한 모델 (BLG 13/13/3 INTERTANKO, 노르웨이)
- 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 - MEPC 58('08. 10. 6~10. 10)에서 제출된 VOC 관리계획(MEPC 58/5/1)('08)의 지침서 초안에 따라 VOC 관리계획 모델을 제시함
- 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 - O Part B(비메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조절 순서와 기록관련)를 VOC 관리계획 지침서에 포함시키기로 함
- □ 기존엔진²⁰⁾의 "승인된 방법"(Approved Method)²¹⁾ 적용관련 (BLG13/13/4: 일본, BLG13/13/7 & 13/13/8: 덴마크)
- 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- 개정된 MARPOL 부속서 6과 NTC 2008에 따라 기존엔진에 Tier I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용어에 대한 정의를 논의함

¹⁷⁾ INTERTANKO (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) : 국제 독립유조선 선주협회

¹⁸⁾ OCIMF (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) : 국제 정유사 유류운송 협의체

¹⁹⁾ INTERTANKO (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) : 국제 독립유조선 선주협회

²⁰⁾ 기존엔진 : 1990년 1월 1일 이후 2000년 1월 1일 이전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출력 5,000 kW 이상, 실린더용적 90리터 이상인 엔진

^{21) &}quot;승인된 방법" (Approved Method): 기존엔진에 대하여 주관청에서 승인한 NOx 저감방법

2.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기존엔진에 "승인된 방법"의 적용을 위한 아래의 용어 정의 명확화
 - △NOx: 엔진의 설계가중 NOx 배출치와 MEPC.176(58) 13.7.4('08. 10. 10. 채택) 에서 규정하고 있는 Tier I 제한치의 차이
 - Power : "승인된 방법" 적용의 기준이 되는 엔진의 출력 (kW)
 - 비용(Cost) : 엔진부품 가격에 설치비용과 수리비용을 포함한 것
- 회의결과를 MEPC 59('09, 7 개최예정)에 MEPC Circular로 제출예정
- □ SCR²²⁾ 시스템을 장착한 엔진의 인증에 관한 지침서 관련 (BLG13/13/1: 일본, BLG13/13/6 & 13/13/9: 미국)

1.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결과

○ 개정된 MARPOL 부속서 6와 NTC 2008에 따라 Tier III²³⁾의 NOx 기준을 따르기 위해 서는 SCR 시스템이 장착된 엔진의 배출시험 에 대한 방법을 미국과 일본이 제안함

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논의시간 부족으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BLG 14('10) 개최예정)에서 논의하기로 함
- 작업반(WG 3) 회의결과
- 1) 작업반 결성
 - 회의 첫날 (3월 2일) 다음과 같이 작업반

(WG 3) 결성

- 의장: Mr. Wayne Lundy(United States)
- 간사: Ms. P. Charlebois (IMO)

2) 논의결과

- MEPC 58(08. 10. 6~10. 10) 위임사항에 따라 아래의 작업을 실시함
 - "검사와 증서발급 조화 제도하의 개정된 검사지침서"의 개정안을 마련함(Res. MEPC.128(53))(05. 7. 22. 채택)
 - "MARPOL 부속서 6에 따른 PSC를 위한 지침서"의 개정안을 마련함(Res.MEPC. 129(53))(05, 7, 22, 채택)
 - "선박에 공급된 잔류유의 황함유량 모니 터링을 위한 지침서"의 개정안을 마련함 (Res.MEPC.82(43))(99, 7, 1, 채택)
 - 개정된 MARPOL 부속서 6에 따른 "기름 샘플링에 대한 지침서"의 개정안을 마련함 (Res.MEPC.96(47))(02, 3, 8, 채택)
 - 개정된 MARPOL 부속서 6 규칙 15.6(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)에 의해 요구되는 "VOC 관리계획서 개발을 위한 지침서"를 수정함 (BLG 13/13/2, BLG 13/13/3 관련)
 - "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위한 지침서"의 개정 안을 마련함(Res.MEPC.170 (57))(08. 4. 4. 채택)
- BLG 13 의제문서를 검토하고 아래의 결론을 도출함
 - BLG13/13/2 문서로 검토하고 INTER -TANKO와 OCIMF가 제안한 바와 같이

²³⁾ 질소산화물(NOx) 배출 제한 기준 (Tier Ⅱ: 현행대비 약 20% 저감, Tier Ⅲ: 현행대비 약 80% 저감)

RPM	Tier I(현행)	Tier I(11. 1. 1이후)	Tier Ⅱ(16. 1. 1이후)
n이 130이하	17.0g/kWh	14.36g/kWh	3.4g/kWh
n이 130이상 2000미만	$45.0 \times n(-0.23) g/kWh$	$44.0 \times n(-0.23) g/kWh$	$9 \times n(-0.2)g/kWh$
n이 2000이상	9.8g/kWh	7.66g/kWh	2.0g/kWh

²²⁾ SCR (Selective Catalyst Reduction) : 디젤엔진의 연소가스를 NH3 (암모니아)를 이용하여 NOx 양을 저감시키는 방법. 이 방법을 사용하면 NOx 발생량의 약 90%을 저감시킬 수 있음

- VOC 관리계획 지침서 초안 중 3가지의 사항(BLG13/13/2 보고서 참조)을 삭제 하기로 함
- BLG 13/13/3 문서를 검토하고 Part B (비메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조절 순서와기록관련)를 VOC 관리계획지침서에 포함키로 합의
- BLG13/13/4, BLG13/13/7와 BLG13/13/8의 문서를 검토하고 기존엔진의 "승인된 방법"(Approved Method)적용관련사항을 검토하고 △NOx, 출력과 비용(Cost)에 대한 정의를 내림
- 기존 NTC 1997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엔진과 개정된 NTC 2008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엔진에 대하여 정리하였음

의제 14

남극해역에서 선박 중질유의 운송 및 사용 관련 MARPOL Annex I 개정

□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

- 남극해역에서 발생되는 일련의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로 남극화경이 위협
- BLG 12에서 노르웨이는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남극의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남극해역에서

- 중유 사용 및 운송을 금지하는 MARPOL Annex I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, 뉴질랜드 등 다수의 국가의 지지를 받음
- MEPC 58에서 동 의제가 BLG 13 정식의제로 채택
- BLG 13에서 뉴질랜드, 노르웨이가 동 의제 관련하여 MARPOL Annex I 개정안을 제출

□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

- O MARPOL Annex I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새 규칙(제43규칙)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 하여 MEPC 59에서 채택여부 결정
 - 남극해역에서 다음의 연료를 사용/운반 하거나 화물로서 운송하는 것은 금지
 - ① 비중이 900kg/m³(15℃)이상인 원유
 - ② 비중이 900kg/m³(15℃)이상 또는 동점도 180 mm²/s(50℃)이상인 원유 이외의 기름
 - ③ 비투멘, 타르 및 이들의 에멀젼
 - 기존에 남극에서 사용/운반이 금지된 기름을 사용/운반한 선박이 남극해역을 운항할 경우 별도의 탱크세정 및 기름파이프의 세정은 요구되지 않음
 - 수색구조 또는 선박안전과 관련된 선박은 제외